



2010년도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[www.kcca.or.kr](http://www.kcca.or.kr)



## 2010년도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

「관세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09년 12월 31일  
기획재정부장관

###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“100분의 30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“2009년 12월 31일”을 “201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시행한다. 다만, 제37조제2항제25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 
(제46조제2항 관련)연번관세율표

| 연번 | 관세율표<br>번호   |          | 품명   | 규격   |
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|--|
|    | 호            | 소호       |  |  |
| 34 | 8479         | 89       | 적재기 또는 분리기   | 수치제어,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.<br>6. 골판지 적재용으로서 폭이 1.8미터 이상이고, 최대 분당 250미터 이상의 속도로 생산되는 골판지를 적재할 수 있는 것  |
| 35 | 8442         | 30       | 결속기, 포장기 또는 튜빙기  | 수치제어,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.<br>2. 기저귀(팬츠형)을 포함한다, 생리대, 화장지, 키친타월 또는 미용지를 투입, 정렬, 포장, 실링(Sealing) 및 자동 취출(取出)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<br>㉠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50백(bag) 이상인 것<br>㉡ 종이상자, 필름 또는 튜브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6케이스 이상이거나 분당 6번들 이상인 것<br>3. 롤 또는 시트상태의 종이제품 처리용으로서 투입·정렬·포장·실링 또는 테이핑 공정으로 구성되고, 자동 취출 기능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<br>㉠ 최대 포장능력이 시간당 20롤 이상인 것<br>㉡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14림 이상인 것<br>㉢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3팩 이상인 것 |
| 42 | 8441         | 10,80    | 절단기, 슬리터(Slitter), 파단분할기, 슬라이싱기, 와이어쏘우(Wire Saw) 또는 클래빙기(Cleaving) | 수치제어,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.<br>2. 알루미늄박, 알루미늄판, 종이, 필름, 부직포, 스테인리스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트리밍 또는 권취 할 수 있는 것<br>20.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과선을 넣을 수 있는 것  |
| 52 | 8441<br>8443 | 30<br>91 | 플렉소폴더스티처 (Flexo Folder Stitcher) 또는 플렉소폴더글루어 (Flexo Folder Gluer)  | 수치제어,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골판지상자 제조시 인쇄공정 및 봉합공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.<br>1. 풀봉합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00매 이상인 것<br>2. 철판을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700회 이상인 것  |